

제 329 호  
1982. 8.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판집 : 공보 관리부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출판발간실  
전화 725-6090

# 시 보

## 차 래

### ○ 조례

제 1671 호 :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파세면제에 관한 조례	3
제 1672 호 : 지방공사 강남병원 설치조례	4

### ○ 고시

제 37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
제 375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교육및연구지구) 실효 및 결정 고시	9
제 376 호 : 공원조성계획일 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9

〈이면제속〉

공												
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085

제 377 호 : 도시계획사업 ( 운동장 ) 시행허가변경	10
제 378 호 : 도시계획용도 ( 상업 ) 지역변경지적고시	11
제 379 호 : 육류변동가격고시	11
제 380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12
제 381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효 및 결정	12

◎ 공 고

제 401 호 : 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 ( 과징금 ) 공인신조등록공고	14
---------------------------------------	----

◎ 예 규

제 429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규정증 개정규정	14
-------------------------------	----

◎ 사령

**조 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 제 1671호**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주민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①지부·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공사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주민세를 면제한다.

②병원공사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

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병원공사에 대하여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8-4 제 929 호

시

보 1982.9.11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  
강남병원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72 호

####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법인격 ) 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 공사설립 ) ① 병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설립한다.

② 병원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 자본금 ) ① 병원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자본금은 서울특별시가 전액을 출자하며 이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 5 조 ( 정관 ) ① 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의학연구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조 ( 이사회 ) ① 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병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 2 장 임원과 직원

제 7 조 (임원) ① 병원에 이사 (병원장 포함) 및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중 1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된다.

제 8 조 (병원장) ① 병원장은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③ 병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이사) ①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는 병원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 10 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직원) ① 직원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장이 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사 기능적 및 고용직의 채용에 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제 13 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타 의료기관의 직원을 병원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경직제한) 병원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병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兼할 수 없다.

## 제 3 장 사 업

제 13 조 (사업) 병원은 다음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료사업

2. 의료도원의 훈련

3. 의학의 연구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 14 조 (대행사업) ① 병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그 타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 대행시 필요한 비용은 해당 사무의 위탁자가 부담한다.

<p><b>제 4 장 재무회계</b></p> <p><b>제 15 조 (사업년도)</b> 병원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년도에 의한다.</p> <p><b>제 16 조 (예산)</b> 병원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b>제 17 조 (결산)</b> 병원장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6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 18 조 (제리의 원칙)</b> 병원의 계리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제리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 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p> <p><b>제 19 조 (손익금처리)</b> ① 병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월결손금의 보전</li> <li>2. 사업준비금의 적립</li> <li>3. 차기이월</li> </ol> <p>② 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p>	<p>로도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p> <p><b>제 20 조 (사채발행 및 외국차관등)</b></p> <p>① 병원장은 법제 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p> <p>② 병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p> <p><b>제 21 조 (기금 및 보조금등)</b></p> <p>① 병원은 정관이 정하는 특수연구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병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로 병원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때와 병원 경상수입으로 병원의 시설비 또는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 5 장 감 독</b></p> <p><b>제 22 조 (감독)</b></p> <p>① 시장은 병원의 업무를 감독한다.</p> <p>② 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li> <li>2. 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li> </ol>
---------------------------------------------------------------------------------------------------------------------------------------------------------------------------------------------------------------------------------------------------------------------------------------------------------------------------------------------------------------------------------------------------------------------------------------------------------------------------------------------------------------------------------------------------------------------------------------------------------------------------------------------------------------------------------	----------------------------------------------------------------------------------------------------------------------------------------------------------------------------------------------------------------------------------------------------------------------------------------------------------------------------------------------------------------------------------------------------------------------------------------------------------------------------------------------------------------------------------------------------------------------------------------------------------------------------------------------------------------------------------------------------------------------------------------------------

<p>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p> <p>4. 의료수가</p> <p>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2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병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제 6장 보 칙</p> <p>제 24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 13조의 고유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제 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직원임용의 특례) 병원장은 제 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원의 최초업무개시 당시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우선하여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p> <p>3. (최초의 사업년도에 따른 경과조치) 병원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원의 설립일로 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4. (권리의 무의 승계) 병원은 설립당시의 서울특별시를 벤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특별시립 강남병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병원이 이를 보유하게 된다.</p> <p>5.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82년도 벤처사업 특별회계중 서울특별시립 강남병원의 고정자산 및 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예산중 병원설립 당시 교부되지 아니한 것은 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② 병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병원의 예산이 확정되던 해 1982년도 서울특별시립 병원사업특별회계(강남병원)을 출전의 회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것과는 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실립되면 그 설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될 것으로 본다.</p>
------------------------------------------------------------------------------------------------------------------------------------------------------------------------------------------------------------------------------------------------------------------------------------------------------------------------------------------------------------------------------------------------------------------------------------------------------------------------------------------------------------------------------------------------------------------------------------------------------------------------------------------------------------------------------------------------------------------------------------------------------------------------------------------------------------------------------------------------------------------------------------------------------------------------------------------------------------------------------------------------------------------------------------------------------------------------------

28-8 제 929 호 시

보 1982. 9. 11

고 시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4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3 호 (76. 12. 20)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제작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호 (81. 12. 31)의 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1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학교: 동일여자중고등학교)  
 부지조성 공사  
 다. 사업면적: 39,779  $m^2$  (12,033명)  
 라. 세부시설 계획  
 ㄱ) 건축면적: 2,115  
 ㄴ) 연면적: 6,949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학교법인 동일학원 이사장 최용찬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ㄱ) 착수예정일: 1982. 9. 20.  
 ㄴ) 준공예정일: 1982. 12. 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 권리의 권리명세

학 교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m^2$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동일여자중 고등학교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임야	38,268	없음
	"	산 100-10	"	188	"
	"	237-16	부지	1,322.3	"
계				39,779 $m^2$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237-16 학교 법인 동  
일학원 이사장 최용찬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  
100-10 동일학교 학교장 김통성

## ◎ 서울특별시고시제 375호

도시계획 용도지구(교육및연구지구)  
실효 및 결정고시

1. 서울특별시 용도지구 중 건설부 고시 제 108호(75. 6. 23)로 결정된 교육 및 연구지구가 지적승인 기간 도파로 인하여 약 결정후 2년이 되는 다음날로 실효되었기 도시계획

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고시 521호(81. 12. 31)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체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책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13.

서울특별시장

## ○ 도시계획 용도지구 실효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고
교육 및 연구지구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일대	4,317,500평	서울대학교 주변

## ○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고
교육 및 연구지구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일대	4,191,000평	서울대학교 주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제 376호

## 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45호(81. 4. 29)로 결정된 당시 관내 반포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일부를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공원법 제 4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 건설부 고시 제 521호(81. 12. 31)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체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국과 강남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14.

서울특별시장

28-10 제 929 호 A

보 1982. 9. 11

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도로 B=8 L=480	반포동 299-1 반포근린 공원내	3,840 ㎡		
변 경	도로 B=8 L=480 정구장 ( 6 면 )	"	3,840 ㎡	기존시설	
	관 리 시 설	"	4,002 ㎡	추 가	
		"	81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제 377호

###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2호(76.6.17) 및 동고시제 341호(76.12.16)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 고시제521호(81.12.31)의 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14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사업시행지 : 종로구 구기동 151 번지의 3 일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운동장) 시행
- (주) 미도파 체육관 시설공사
-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납대문로 2 가 123 번지
- (주) 미도파백화점 대표 유 명진
- 라. 면적 및 규모 : 대지 7,359 ㎡  
전축 350.54 ㎡
-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 :
- 착수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내
-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5 개월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 아. 공사설계 도서 : 별첨

제 929 호 시

보 1982.9.11 28-11

◎서울특별시고시제 378 호

도시계획용도(상업)

지역변경지적고시

1. 건설부고시 제 270호 (82.7.21)  
로 도시계획용도(상업) 지역 변경  
결정된 봉천동 856 번지 (봉천 4 거  
리 일대) 및 신림동 1640 번지  
(신림 4거리 일대)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호 (31.12.31)의 관한뒤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할도에는 관악구청 도시경  
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2.9.14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용도(상업) 지역 변경 지적조사

구 분	변 경 면 적		주 거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상업 지역 - 주거 지역	
봉 천 동 856 일 대	101,700 $m^2$	179,200 $m^2$	봉천 4거리 주 거
신 림 동 1640 일 대	39,600 $m^2$	137,800 $m^2$	신림 4거리 주 거

◎서울특별시고시제 379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  
산부 협회 제 490호에 의거 서울특  
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9.15

서울특별시장 김 성

1. 육류 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그램) 2,050 원
2. 시행일 : 1982.9.16. 부터

28-12 제 929 호 人

보 1982.9.11

◎서울특별시고시제 380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변경허가(2차)

서울특별시고시 제 101호(77.4.  
11)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378호(77.10.27)로 도시계획(학  
교) 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69호(82.7.16)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허가된 성북구 돈암동  
173-1의 23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463호  
(79.12.10)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  
행변경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2.9.1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성북구돈암동 173-  
1의 23필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시계획사  
업(학교) 시행변경허가(2차)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당초면적 및 규모  
국민학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17㎡)

나. 중학교: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연면적 6,558.50㎡)

특별교실:

나. 변경면적 및 규모

국민학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17㎡)

중학교: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연면적 6,558.50㎡)

특별교실: 지하 1층, 지상 6층,  
옥탑(연면적 5,679㎡)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돈암동 173-1  
학교법인 성신학원이사장 리숙종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나. 준공: 1983.12.31

6. 사용할도지: 별첨도지조서(생략)

\*도면은 성북구청도시정비과에 보  
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38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설호 및 결정

1. 서울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  
설(공원)인 안산공원등 9개소 공  
원계획은 건설부고시 제 138호(77.  
7.9) 및 동고시 제 418호(78.12.  
26), 제 390호(79.10.31)로 재  
정비 결정 및 변경 결정된 후 법  
상 지적승인 시효기간내 지적승인  
고시 미이행으로 실효되었기 이에

제 929 호

보 1982.9.11 28-13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521호(81.  
12.31)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및 재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해당지역 관할구  
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인다.

1982.9.15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 1) 시설(공원) 실효조사 : 영향의 결정조서 내용과 같으므로 이와 가름함.
- 2) 실효사수 :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 3) 실효일자 : 위의 결정고시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79.7.9 80.12.16 81.10.31)
- 4) 실효도면 : 결정도면과 같으므로 이와 가름함.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1) 시설(공원) 결정조사

구분	공원번호	공원종류	공원명칭	위치	면적(㎡)	기호
결정	2	자연공원	안산공원	서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북아현, 연희동, 중구신당동, 성동구 행당, 금호, 응봉동	2,014,287	●
"	근 04-02	근린공원	응봉제2공원	중구신당동, 성동구 행당, 금호, 응봉동	18,500	-
"	근 08-05	"	전농제2	동대문구전농, 담암동, 성북구 총암, 돈암, 안암동	161,000	-
"	근 05-02	"	개운공원	성북구 총암, 돈암,	34,223	-
"	근 06-04	근린공원	월곡제1공원	도봉구디아, 번동, 성북구 월곡, 상원동, 강변	1,401,352	-
"	근 07-10	"	궁동공원	서대문구 연희동	130,10	-
"	근 11-04	"	상도공원	동작구 상도동	641,3	-
"	근 11-05	"	삼일공원	관악구 봉천동	141,500	-
"	묘 11-01	묘지공원	현충공원	동작구 사당동, 동작혹석, 상도동	2,183,905	-

2) 결정도면 : 별첨(생략)

28-14 제 929 호 시

보 1982.9.11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01호

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파징금  
금)공인신조 등록공고

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파징금 수  
납문체용)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  
하여 서울특별시 회계 관계 공무원 직  
원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  
임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가. 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인(파징금)  
나. 서울특별시분임수입금출납원인(파징금)

2. 사용개시일 : 82.9.17.

3. 공인의 인영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분임수입금출납원인

##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제 429호

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  
규정증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2.9.20

서울특별시장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한 모든 시 산하기관에 근  
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권  
을 내부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은 시장이 발급한다.

제5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수한 공무원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소  
각한다.

제 929 호 시

보 1982.9.11.28-15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조(공무원증 분실자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회분실 - 경고(훈계)  
• 2 회이상분실 - 징계 요구

② 공무원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무 원 증 번 호 부 여 표

1. 본 청 : 행정직, 별정직	1 - 00001
기술직, 기능직, 전문직	2 - 00001
고용직	3 - 00001
2. 구 청	5 - 00001
3. 사업소	6 - 00001
4. 소방본부	7 - 00001
5. 경찰국	8 - 00001

28-16 제 929 호 시

보 1982.9.11.

(별지 제 6호 서식)

공무원증 회수 및 소각대장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공무원증 번호	회수일자	회수사유	소각일자

130mm × 268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 7호 서식)

공무원증 분실 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공무원증 번호	분실사유	비고 (조치)

130mm × 268mm

(신문용지 54g/m<sup>2</sup>)

공무원증 발급규정신·구조 문대 비표

현 행	개 전
<p>제 2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u>시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u> (<u>잡금직원, 전문직원 및 시한부직원을 포함한다.</u>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p> <p>제 3조 ( 발급권의 위임 ) <u>서울특별시</u>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각급 기관 장에게 내부 위임된 <u>공무원증</u> 발급대상 직원은 다음과 같다.</p> <p>1. 구청장 및 2급사업소장 :</p> <p style="padding-left: 2em;"><u>3급을류이하 공무원</u></p> <p>2. 3급사업소장 :</p> <p style="padding-left: 2em;"><u>4급이하 공무원</u></p> <p>3. 4급사업소장 :</p> <p style="padding-left: 2em;"><u>고용원 기타</u></p>	<p>제 2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 ... <u>시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u>에게 적용한다.</p> <p>제 3조 ( 발급권의 위임 ) 1)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과 소방본부 장 및 경찰국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권을 내부 위임한다.</p> <p>② 제 1항의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은 시장이 발급한다.</p>
<p>제 5조 ( 공무원증 번호 부여 ) 공무원증 번호는 별표와 같이 부여한다.</p>	<p>제 5조 ( 공무원증 번호 부여 ) 공무원증 번호는 "번호"와 같이 부여 한다.</p>

28-18 제 929 호 시

보 1982.9.11.

현 행	개 정
(별표)  =공무원증번호부여표=  1. 본청 : 행정직·별정직· <u>전문직</u> 1-00001 기술직·기능직 2-00001 고용직 기타 3-00001 2. 구청 5-00001 3. 사업소 6-00001	(별표)  =공무원증번호부여표=  1. 본 청 : 행정직·별정직 1-00001 기술직·기능직· <u>전문직</u> , 2-00001 고용직 3-00001 2. 구 청 5-00001 3. 사 업 소 6-00001 4. 소방본부 7-00001 5. 경찰국 8-00001
제 9조 (공무원증의 회수) 발급권자는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분실확인서를 받는다.	제 9조 (공무원증의 회수) ①발급권자는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 받는다. ②회수한 공무원증은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소각한다.
(신 설)	제 10조 (공무원증 분실자에 대한 조치) ①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회분실 - 경고 (훈제) • 2 회이상 분실 - 징계 요구 ②공무원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사  
회

© 1982년 9월 15일자

령제 48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상희	건축지도과	문화기획과	지방건축기사
김용백	성동구	수원기동북문구	"
한수창	도봉구	설성서강시동	"
서장원	설동구	성서강시동	"
윤혁경	강릉문구	성서강시동	"
오재룡	서대문구	성서강시동	"
박성근	강릉구	성서강시동	"
정해동	강남로	성서강시동	지방건축기사보
이철우	구영동	성서강시동	"
김경복	동작구	성서강시동	"
김정훈	동작로	성서강시동	"
조민주	강동구	성서강시동	"
이강옥	강동구	성서강시동	"
이승택	강북구	성서강시동	"
김진홍	시립운동장과	성서강시동	"
이현기	문화과	성서강시동	"
윤종인	상하수국수원기전과	성서강시동	"
이실동	강남구	동일동	지방건축기원
김주영	시립대학	동작산로	"
이질수	동작구	"	"
서봉석	공무원교육원	작사로	"
배동석	수도로	작사로	"
조방석	성동구	동작로	"
이병석	강남동	대학로	지방건축기원보
임순	강강동	시중	"
김옥성	강동구	성화구	"

28-20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성명	발행사항	현부서	직급
이기영	강남구	중구	지방건축기원보
박인섭	강동구	"	"
방민수	강남구	"	"
이동호	강서구	"	"
김중년	강동구	"	"
노현도	강남동	"	"
임정정	강남작봉	"	"
정동숙	"	"	"
박재배	강동도	"	"
최재홍	"	"	"
김종관	동성문	"	"
정광준	대북구	"	"
김종학	충성구	"	"
안재준	동구	"	"
정만수	"	"	"
변인원	강동구	"	"
이상규	동작구	"	"
김태웅	북동구	"	"
김용호	"	"	"
허효우	성성구	"	"
지홍선	서문구	"	"
황보창호	대남구	"	"
박철호	서남구	"	"
김수경	강서구	"	"
김인호	대남작	"	"
최인산	강동구	"	"
류육형	"	"	"
한동현	강동구	"	"
이동재	"	"	"
길승봉	구영동	"	"

제 929 호 시

보 1982. 9. 11. 28-21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이운통	현구호근조술순록국묘우준우백관식학일설원원하선원	동포구	지방전축기원보
여박유	영강관동충영성강서마동시중	남악대포북서대포작운동	"
엄조박	임	구구구구구	"
이박나	"	구구구	"
이박이	강	구	"
김고	"	구	"
김박이	영강연상연상	동포구구	지방전축기사
김김황	영료공료공	구과과	"
김왕양	"	과	지방전기기사
김길	연료파(기체기사보)	"	"
김남	"	"	지방기체기사보
최희	청소파(기체기사)	"	"
학정	"	"	지방기체기사
정수	공원수원기기	녹지파	지방기체기사보
김기	수원수	지전파	지방전기기원
한회	"	"	지방전기기사보
안정	"	"	"
준	"	"	지방기체기사보

28-22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강명원	수원기전과	상하수국	지방기체기사
이익로	"	"	지방기체기사보
이경순	운수2과	교통국	지방기체기사
홍순학	교통기획과(기체기사보)	"	지방기체기사보
민수식	도로과	건설관리국	지방기체기사
김재웅	건설행정과	"	지방기체기원
임영룡	도로과	"	지방전기기사
유충근	건축지도과	"	지방전기기사보
김태위	도로과	"	"

령제 482 호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정보회	북부위생처리장장	상공과	지방기체기사
한상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연료과	"
박주남	세종문화회관	건설행정과	"
이경순	교통국	청소과	"
홍만기	종합종합처리사업소	수원기전과	"
김동기	종합건설본부	치수과	"
강용규	자동차관리사업소	운수2과	"
민수식	건설관리국	건설자재사업소	"
강명원	상하수국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이춘성	종합건설본부	북부위생처리장장	"
최정설	환경녹지국	자동차관리사업소	"
공충철	북부위생처리장	총무과	지방기체기사보
이상만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시민과	"
이제호	종합건설본부	연료과	"
양동구	서부위생처리장	청소과	"
조경례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교통기획과	"
신경호	판다구	운수2과	"
김세열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종로구	"
김희완	산업경제국	건설자재사업소	"
남상감	"	중기관리사업소	"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28-23

성명	발행사항	현부서	직급
박인도	종합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지방기체기사보
홍성철	도봉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곽영시	환경녹지국	"	"
탁영동	동대문구	"	"
진용환	김포수원지사무소	"	"
권병호	자동차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	"
김점배	산림경제국	서부위생처리장	"
임승식	총무과	북부위생처리장	"
하영준	농촌지도소	자동차관리사업소	"
홍순학	교통국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소병화	구의수원지사무소	"	"
현상근	선유수원지사무소	"	"
김당수	강동구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김인식	상하수국	선유수원지사무소	"
안정준	"	김포수원지사무소	"
이익노	"	"	"
박길웅	자동차관리사업소	중구	지방기체기원
홍성걸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성동구	"
오종천	"	동대문구	"
김종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도봉구	"
김금철	서부위생처리장	은평구	"
김용구	시립운동장	영등포구	"
김태웅	종합건설본부	관악구	"
신태식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남구	"
길근환	성동구	건설자재사업소	"
김원찬	만리동폐수지	동부건설사업소	"
연일홍	은평구	서부건설사업소	"
송종쇠	노량진수원지사무소	남부건설사업소	"
이정구	북부수도관리사업소	북부건설사업소	"
김유찬	동대문구	중기관리사업소	"

28-24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김상경	강동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기제기원
박상완	영동포수원지사무소	시립운동장	"
박종화	영등포구	서부위생처리장	"
김재웅	건설관리국	자동차관리사업소	"
전혁기	공무원교육원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문호준	성북구	"	"
유승준	시민과	"	"
최수원	강서구	팔당수원지사무소	"
김영진	용산구	김포수원지사무소	"
양승학	중구	만리동배수지사무소	"
박봉식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용산구	지방기제기원보
한원희	북부수도관리사업소	도봉구	"
서정자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동대문구	"
강성기	도봉구	북부건설사업소	"
박광희	김포수원지사무소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한천구	성동구	"	"
유재포	선유수원지사무소	서부위생처리장	"
박극현	북부위생처리장	자동차관리사업소	"
최만선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조동환	종합건설본부	"	"
이성배	영등포구	노량진수원지사무소	"
조남갑	북부수도관리사업소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정연학	서부위생처리장	선유수원지사무소	"

령제 483 호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배종원	만리동배수지사무소장	충무파	지방전기기사
윤은구	선유수원지사무소	상공파	"
박길부	종합건설본부	연로파	"
김기송	"	연로파	"
김원우	산업경제국	종로구	"
제광우	관악구	종북구	"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28-25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김 중 완	산업경제국	서대문구	지방전기기사
안 익 환	구의수원지사무소	관악구	"
이 중 훈	성북구	서부건설사업소	"
신 기 체	죽도수원지사무소	북부건설사업소	"
김 회 태	종로구	구의수원지사무소	"
전 병 우	영등포수원지사무소	죽도수원지사무소	"
임 영 통	건설관리국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이 원 노	동작구	선유수원지사무소	"
이 송 만	서대문구	만리동배수지사무소장	"
김 용 구	세종문화회관	시민과	지방전기기사보
강 도 석	영등포구	"	"
정 현 총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상공과	"
강 성 구	관악구	연료과	"
허 전 옥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도로과	"
오 국 톡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건축지도과	"
백 현 주	서대문구	종로구	"
황 병 하	산업경제국	중구	"
양 사 선	"	용산구	"
이 동 육	용산구	동대문구	"
안 순 환	강동구	성북구	"
유 충 근	건설관리국	"	"
김 기 호	상하수국	서대문구	"
한 회 호	"	"	"
김 태 위	건설관리국	강서구	"
금 봉 순	시민과	관악구	"
기 복 도	"	강남구	"
박 정 식	은평구	강동구	"
박 승 호	성북구	공무원교육원	"
정 영 철	강서구	세종문화회관	"
이 준 규	종합건설본부	종합운동장건설본부	"
위 창 양	중구	서부위생처리장	"
배 민 호	충무과	어린이대공원	"

28-26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경열	강남구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김태기	영동포구	충로구	지방전기기원
김광익	영동포수원지	용산구	"
강행원	종합건설본부	성동구	"
김설식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
이영목	충로구	은평구	"
김석현	북부위생처장	강서구	"
박시철	종합건설본부	영동포구	"
장진영	종합기술사업연구소	"	"
유영운	서부위생처장	"	"
차재창	용산구	서부건설사업소	"
김점식	도봉구	"	"
안천현	관악구	북부건설사업소	"
김충호	종로구	"	"
정수철	환경녹지국	서부위생처리장	"
나용재	성동구	북부위생처리장	"
이준영	중구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조상훈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
정영기	시립대학	"	"
박용철	시민과	"	"
박정하	서대문구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이병복	동대문구	영동포수원지사무소	"
임선목	강서구	선유수원지사무소	"
전만진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종로구	지방전기기원보
차영희	성북구	"	"
박선규	종합건설본부	"	"
서형철	영동포구	중구	"
김종태	종합건설본부	동대문구	"
박성우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
김행목	"	성북구	"

제 929 호 시

보 1982. 9. 11. 28-27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강 범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도봉구	지방전기기원보
노 원 식	종합건설본부	서대문구	"
최 재 곤	선유수원지사무소	영등포구	"
지 영 현	종합건설본부	관악구	"
황 동 준	서부위생처리장	"	"
정 정 환	동대문구	시립대학	"
이 명 기	도봉구	동부건설사업소	"
최 영 진	종로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권 일 혁	성동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1982년 9월 14일자

형 제 484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허 정 현	종합건설본부과 견근률(82.9.14 82.12.31) '한강종합개발추진회원'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
유 성 전	"	지하철도과	"
황 의 태	"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잔 석 대	"	강동구	"
한 형 톡	"	용산구	지방토목기원
이 해 완	"	강서구	"
서 정 수	"	구로구	지방행정주사
이 후 경	"	강동구	지방행정주사보

형 제 48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윤 식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 책에 처함.	충구 수도공사과장	지방토목기자
변 영 균	"	도동구	지방토목기사
송 세 철	성북구근무를 명함.	"	"
정 상 우	지방공무원법 제69 조 제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북부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28-28 제 929 호 시

보 1982. 9.11.

<p>◎ 1982년 9월 15일자      령제 486 호</p> <p>비상계획과      윤석봉 지방행정주사보</p> <p>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 종합기술시험연수소      이정희 지방행정서기 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사회복지과      임주영 행정주사보</p> <p>구로구독산동      박순식 지방행정서기 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p> <p>아동병원      문정주 지방기계원(기능적 8등급)</p> <p>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경찰국 면허과      이광봉 지방기계수(10등급)</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1982년 9월 17일자      령제 489 호</p> <p>도로과도로시설제장      박인규 지방토목기과 온평구</p>	<p>· 중      구      이채근 지방토목기과 도로과도로시설제장</p> <p>◎ 1982년 9월 16일자      령제 490 호</p> <p>영동포구      홍순구 지방건축기사 성북구 근무를 명함.</p> <p>◎ 1982년 9월 17일자      령제 491 호</p> <p>공원녹지과      이창규 지방전기기사</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1982년 9월 18일자      령제 492 호</p> <p>관악구산업과      신동진 행정주사보</p> <p>원호처 전출을 명함.</p> <p>◎ 1982년 9월 20일      령제 493 호</p> <p>신규정연경</p> <p>지방보건연구사시보에 입함.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근무를 명함.</p>
----------------------------------------------------------------------------------------------------------------------------------------------------------------------------------------------------------------------------------------------------------------------------------------------------------------------------------------------------------------------------------------------------------------------------------------------------------------------------------------------	-----------------------------------------------------------------------------------------------------------------------------------------------------------------------------------------------------------------------------------------------------------------------------------------------------------------------------------------------------------------------------------------------------------------------------